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0호 2026. 7. 20. (월)

규 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7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3
-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51

고시 · 공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63
- 2026년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고 74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8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 목포시 기간제근로자(의전차량 운전직)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 97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4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태하의 징후가 농후하거나”를 “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부, 중증장애인 등 비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나. 부부 공무원 중 1인 (단, 부부 모두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 배우자의 직업 특성(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이나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비상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① 비상근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발령하며,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자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별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① ----- ----- ----- ----- ----- -----.
1. 비상근무의 종류	1. -----
가.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가. ----- ----- <u>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u>
나.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u>사태</u> 하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나. ----- ----- <u>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u> ----- ----- ----- <u>있는 경우</u>
다.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할 때	다.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신 설>

2. 비상근무 대상

가. ~ 다.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
고 인정되는 경우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
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부, 중증장애인 등 비상근
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나. 부부 공무원 중 1인 (단, 부

<u>제21조 ~ 제23조 (생략)</u>	<u>부 모두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u> <u>다. 배우자의 직업 특성(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이나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비상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u> <u>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u>
--------------------------------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5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자격증 등의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15, 별표16과”을 “별표15와”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별표 7의4, 별표 15, 별표 16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이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점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 업 기 사 자 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 가
	데 이 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 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 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 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 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보건교 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기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 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 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 급 자 (일 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 성동위원소취급 자(일반), 방사 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 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산업기사 :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 료사, 위생사, 영양 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 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가공 ,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 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 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 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 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 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 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 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 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 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 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 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 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환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 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가공 , 전자, 전자계 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 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 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 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 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 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 종사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 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 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 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 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 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 시스템응용 가공 , 전자계산기제어, 에 너지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향로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향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향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향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 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시)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계,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 업 연 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 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방재안전연구	기사(방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5조의3 관련)

1.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업무 구분	부여 기준	부여 가산점	가산점 한도
전문 직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4년 이하: 1개월당 0.1점 • 4년 초과~5년 이하: 1개월당 0.12점 • 5년 초과 : 1개월당 0.15점	2.4점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업무 구분	부여 기준	부여 가산점	가산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66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 서무·회계 업무 담당자 등 상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 자, 팀·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2점	0.72점

※ 비고

1. 평정대상기간 중의 실적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항목에만 반영한다.(이중 적용은 불가)
 - 전문관 근무경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이중으로 해당하는 경우
 - 근무경력 가산점과 실적 가산점(격무부서) 항목에 이중으로 해당하는 경우
2. 가산점은 평정대상기간 내 직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반영하며,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급 변동일로부터 각 항목의 기준에 따른 실적에 대해 반영한다.
3.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근무경력 가산점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 (자격증 등의 가점) [조 제목 개정 2017.7.24.] 「지방공 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은 <u>별표15, 별 표16과 같다.</u> <u><신 설></u>	제25조의2 (자격증 등의 가산점) - ----- ----- ----- - <u>별표15와</u> -----. 제25조의3 (근무경력 가산점) 「지 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 른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은 <u>별표16과 같다.</u>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6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	276	166	6	15	42	47
	7급	356	218	14	25	45	54
	8급	346	168	10	22	49	97
	9급	298	137	1	14	43	103
연구직	계	13	7			6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6			5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6	166	6	15	42	47
		행정	57	32	5		2	18
		세무	7	7				
		사회복지	10	5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환경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7	13				14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2			1	
	7급	소계	356	218	14	25	45	54
		행정	101	54	12		9	26
		세무	21	20			1	
		사회복지	46	26				20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7	10			17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			1		
		식품위생	1			1		
		간호	14			12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2				2	
		공업+열관리운영	1				1	
		시설+건축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8급	소계	346	168	10	22	49	97
		행정	93	47	6		13	27
		세무	8	6			2	
		사회복지	58	23				35
		사서	3	3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6			6		
		간호	22			1		21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사회복지	14	2				12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5	2		3		
		운전	14	12	1		1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3				3	
		공업+화공운영	1				1	

	9급	소계	298	137	1	14	43	103
		행정	72	33			2	37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48	6				42
		사서	1	1				
		공업	15	3			12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29	6				23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2	1				1
		행정+방송통신	3	2			1	
		사회복지+보건	5			5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6				6	
		공업+화공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3	7			6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1	6			5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 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직급별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74	741	35	80	194	324	총 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계	1	1	0	0	0	0	0	정무직	계	1	1	0	0	0	0	0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7	730	35	80	188	324		일반직	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1	1							3급	1	1					
	4급	10	7	1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5급	70	33	3	3	8	23	
	6급	276	166	6	15	42	47			6급	276	166	6	15	42	47	
	7급	354	218	14	23	45	54			7급	356	218	14	25	45	54	
	8급	344	164	10	24	49	97			8급	346	168	10	22	49	97	
	9급	302	141	1	14	43	103			9급	298	137	1	14	43	103	
연구직	계	13	7			6			연구직	계	13	7			6		
	연구관	2	1			1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6			5				연구사	11	6			5		
지도직	계	3	3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3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41	35	80	194	324	총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 직		합 계	1	1					정무 직		합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 직		일반직 합계	1357	730	35	80	188	324	일반 직		일반직 합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행정	2	2				
		기술	1			1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행정	14	7	1			6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현행									개정안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 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 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 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 +시설	1	1							행정+공업+녹지+ 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 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 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 경연구관	1				1				행정+공업+환경+환경 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 생+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 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 경연구관	1				1				공업+보건+환경+환경 연구관	1				1	
	6급	소계	276	166	6	15	42	47		6급	소계	276	166	6	15	42	47
		행정	57	31	5		2	19			행정	57	32	5		2	18
		세무	7	7							세무	7	7				
		사회복지	10	5				5			사회복지	10	5				5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보건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3	2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사회복지	27	13				14
		행정+전산	7	7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 호	3					3			사회복지+보건+간 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현행									개정안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수 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 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전산+방송통 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공업+학예연 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해양수산+시 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보건+식품위 생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방재안 전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시설+사무운 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행정+녹지+시설+농 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공업+전기운영+기 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 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 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약 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방 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농 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위+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위+농 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보건+시설+방 재안전	1	1				
		공업+수위+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위+환경+환 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 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3			1				사무운영	3	2			1	
	7급	소계	354	218	14	23	45	54		7급	소계	356	218	14	25	45	54
		행정	101	54	12		9	26			행정	101	54	12		9	26
		세무	21	20			1				세무	21	20			1	
		사회복지	46	26				20			사회복지	46	26				20

현행									개정안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전산	4	2	1		1				전산	4	2	1		1	
		숙기	1		1						숙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7	10			17				공업	27	10			17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6	6							해양수산	6	6				
		보건	1			1					보건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간호	12			10		2			간호	14			12		2
		환경	5	3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운전	16	15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2				2	

현행									개정안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작종 별	작업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열관리운영	1				1	
											시설+건축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8급	소계	344	164	10	24	49	97		8급	소계	346	168	10	22	49	97
		행정	91	45	6		13	27			행정	93	47	6		13	27
		세무	8	6			2				세무	8	6			2	
		사회복지	56	21				35			사회복지	58	23				35
		사서	3	3							사서	3	3				
		속기	2		2						속기	2		2			
		전산	4	4							전산	4	4				
		공업	19	4		1	1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보건	4			4		
		의료기술	6			6					의료기술	6			6		
		간호	24			3		21			간호	22			1		21
		환경	3	1			2				환경	3	1			2	
		시설	26	19			7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방송통신	3	1	1		1	
		행정+사회복지	14	2				12			행정+사회복지	14	2				12
		행정+세무	5	5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5	2		3					사회복지+간호	5	2		3		

현행									개정안								
작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작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운전	14	12	1		1				운전	14	12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3				3	
											공업+화공운영	1				1	
	9급	소계	302	141	1	14	43	103		9급	소계	298	137	1	14	43	103
		행정	77	37			2	38			행정	72	33			2	37
		세무	4	4							세무	4	4				
		전산	3	3							전산	3	3				
		사회복지	50	8				42			사회복지	48	6				42
		사서	1	1							사서	1	1				
		공업	15	3			12				공업	15	3			12	
		녹지	4	4							녹지	4	4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보건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환경	6	3			3	
		시설	18	17			1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4	3			1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28	6				22			행정+사회복지	29	6				23
		행정+전산	6	5			1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8	7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2	1				1			행정+방재안전	2	1				1
		행정+방송통신	3	2			1				행정+방송통신	3	2			1	
		사회복지+보건	5			5					사회복지+보건	5			5		
		공업+시설	2	2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기계운영	7				7				기계운영						

현행									개정안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동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시설+방재 안전	1	1							행정+시설+방재 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의료기술	1			1					사회복지+보건+ 의료기술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6				6	
											공업+화공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연구 직		연구직 합계	13	7			6		연구 직		연구직 합계	13	7			6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1	6			5			연구사	연구사 합계	11	6			5	
		학예연구사	9	5			4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1				1				환경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 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 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농촌지도사	3	3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7 호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절 경영분석

제1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결산

제6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사업 회계감사

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수도과장

2. 하수과장

3. 상하수도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7장 채권관리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부터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까지를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121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부터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까지를 제127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7조제5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 년 이상 (5)	10 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 명 이상 (5)	15 명 이상 (4)	10 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 건 미만 (2)	10 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 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수행 계획 (65)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합 계		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신 설> 제111조(경영분석)----- 제112조(경제성 분석)-----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신 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신 설>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절 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 제112조(경제성 분석)-----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제2절 결산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제3절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 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상수도 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 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감사 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 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수도과장

2. 하수과장

3. 상하수도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7장 채권관리

제115조 (채권의 관리책임)-----

제116조 (채권의 관리)-----

제117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8조 (채권의 독촉)-----

제119조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20조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8장 보칙

제121조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2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7장 채권관리

제121조 (채권의 관리책임)-----

제122조 (채권의 관리)-----

제123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24조 (채권의 독촉)-----

제125조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26조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8장 보칙

제127조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8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목포시 훈령 제878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정원 승인서

부 서		현 정원	조정	증감	조정내역			비 고
합 계		1,374	1,374	-				
본청	소 계	741	741	-				
	기 획 예 산 과	23	23	-	9급	행 정	△1	
					9급	행 정 + 세 무	⊕1	
	큰목포기획단	7	7	-	6급	사 무 운 영	△1	
					6급	행 정	⊕1	
	자 치 행 정 과	35	35	-	9급	행 정	△2	
					8급	행 정	⊕1	
직속기관					9급	행 정 + 세 무	⊕1	
	사 회 복 지 과	41	41	-	9급	사 회 복 지	△1	
					8급	사 회 복 지	⊕1	
	노인장애인과	25	25	-	9급	사 회 복 지	△1	
					8급	사 회 복 지	⊕1	
	소 계	80	80	-				
	건 강 정 책 과	33	33	-	8급	간 호	△1	
사업소					7급	간 호	⊕1	
	하당보건지소	22	22	-	8급	간 호	△1	
					7급	간 호	⊕1	
	소 계	194	194	-				
	수 도 과	41	41	-	7급	전 기 운 영	△1	
					7급	공업+전기운영	⊕1	
					7급	기 계 운 영	△1	
					7급	운전+기계운영	⊕1	
	하 수 과	27	27	-	9급	기 계 운 영	△1	
					9급	운전+기계운영	⊕1	
					9급	기 계 운 영	△1	
					9급	운전+기계운영	⊕1	
	남해수질관리과	28	28	-	8급	전 기 운 영	△1	
					8급	공업+전기운영	⊕1	
					8급	화 공 운 영	△1	
					8급	공업+화공운영	⊕1	
					9급	전 기 운 영	△1	
					9급	공업+전기운영	⊕1	
					9급	기 계 운 영	△4	

부 서		현 정원	조정	증감	조정내역			비 고
동행정부지센터					9급	공업+기계운영	⊕ 4	
	북항수질관리과	15	15	-	8급	기 계 운 영	△ 1	
					8급	공업+기계운영	⊕ 1	
					9급	화 공 운 영	△ 1	
					9급	공업+화공운영	⊕ 1	
					7급	전 기 운 영	△ 1	
	7급	공업+전기운영	⊕ 1					
	7급	건 축 운 영	△ 1					
	7급	시설+건축운영	⊕ 1					
	8급	전 기 운 영	△ 1					
	8급	공업+전기운영	⊕ 1					
	9급	전 기 운 영	△ 1					
	9급	공업+전기운영	⊕ 1					
	9급	기 계 운 영	△ 1					
	9급	공업+기계운영	⊕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14	-	7급	열 관 리 운 영	△ 1	
					7급	공업+열관리운영	⊕ 1	
					9급	사 무 운 영	△ 1	
					9급	행 정	⊕ 1	
	자동차등록사무소	18	18	-	8급	기 계 운 영	△ 1	
					8급	공업+기계운영	⊕ 1	
					9급	행 정	△ 1	
					9급	행 정 + 세 무	⊕ 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5	15	-	7급	기 계 운 영	△ 2	
					7급	공업+기계운영	⊕ 2	
					8급	기 계 운 영	△ 1	
					8급	공업+기계운영	⊕ 1	
소 계		324	324	-				
용 당 1 동		14	14	-	9급	행 정	△ 1	
					9급	행정+사회복지	⊕ 1	
상 동		19	19	-	6급	행 정	△ 1	
					6급	행정+사회복지	⊕ 1	

[별표1] (개정 2013.12.23, 2014.3.31, 2014.6.2, 2015.1.12, 2015.6.8, 2015.8.3, 2016.1.18, 2016.1.25, 2016.4.11, 2017.1.19, 2017.7.13, 2018.1.8, 2018.7.13, 2019.1.3, 2019.6.10, 2019.12.30, 2020.5.25, 2021.1.4, 2021.6.28, 2022.1.3, 2023.1.16, 2023.7.17, 2024.1.22, 2024.07.15, 2025.1.6, 2025.7.14, 2025.12.29, 2026.7.20.)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본청)

기 관 명			본청 소계	감 사	본 청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기 획 예 산 실	큰 목 포 기 단 과	홍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스 마 트 정 보	자 치 행 정	사 회 복 지	노 인 장 래 자	여 성 보 육	민 생 보 육	관 광 지 점 추 진	문 화 재 유 산	인 문 재 정	스 스 스 스	지 역 경 제	전 산 인 구	청 년 정 책	농 업 개 발	해 안 개 발	수 산 개 발	기 후 순 환	자 원 순 환	도 시 지 정	건 축 재 생	도 시 유 산	도 시 유 산	공 공 유 산	재 난 안 전	건 설 행 정	교 통 정 통									
직급	부	서			명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총	정	무	직	합	계	741	12	23	7	15	46	25	18	35	41	25	30	29	22	10	17	23	16	21	16	16	14	15	24	17	33	19	23	17	20	30	21	24	22	15
정무직	시	장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730	12	23	7	15	46	25	18	33	41	25	30	29	21	10	15	23	16	21	16	16	12	15	24	17	33	19	23	16	18	29	21	24	22	15	
3급	소	계																																							
4급	소	계																																							
	행	정																																							
	행	정																																							
5급	소	계																																							
	행	정																																							
	시	설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7급	소	계	218	4	8	3	23	11	5	10	16	6	10	3	6	3	3	1	6	7	6	3	4	2	7	7	13	5	5	4	6	7	9	5	5	5	
	행	정	54	2	7		1	2	8					3	1	2	1	4	2	1	3					2	2	1	1	1	3	7	9	5	5	5	
	세	무	20				19	1																													
	전	산	2				1																										1				
	사	회	복	지	업	26				15	3	8																									
	공	업	10	1				1						1					1	2						2							1		1		
	농	업	1																		1																
	녹	지	3																													3					
	해	양	수	산	6																			6													
	환	경	3																							3											
	시	설	29	1				1					2	1	1			1	1					2				4	4	3	3		2	2	1		
	방	송	통	신	4				3																								1				
	운	전	15				1	4		1																7					1				1		
	행	정	+	세	무	4			4																												
	행	정	+	전	산	5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공	업	4			1						1		1																			1	
	행	정	+	농	업	2																2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2													1			1													
	행	정	+	식	품	위	생	1			1																										
	행	정	+	환	경	4													1						1	2											
	행	정	+	시	설	4													1												1	1	1				
	행	정	+	방	재	안	전	3																									3				
	전	산	+	방	송	통	신	2		2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1																															
	공	업	+	시	설	2									1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농	업	+	수	의	1														1														
	사	회	복	지	+	보	건	+	간	호			1																								
8급	소	계	168	4	4	2	5	9	5	4	4	12	10	10	8	7	1	2	5	1	2	3	6	2	5	4		11	5	4	7	2	4	3	6	6	5
	행	정	47	1	3	1	2		2		3	1		1	4	2		1	2		2	2	4		2	1			1	1	2	2			1	2	4
	세	무	6					5			1																										
	전	산	4				1		2						1																						
	사	회	복	지	서	23					10	6	7																								
	사	회	복	지	서	3													3																		
	공	업	4					1																				1					1				
	농	업	1																						1												
	녹	지	3																													3					
	해	양	수	산	3																				1	2											
	환	경	1																									1									
	시	설	19	1											3	2								1				1	2	2	3				3	1	
	방	송	통	신	1					1																											
	운	전	12				1		1					1														6	1							2	
	행	정	+	세	무	5		1		3	1																										
	행	정	+	전	산	2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보	건	4										2																					
	행	정	+	환	경	1								1												1											
	행	정	+	시	설	7			1										1										1	1	1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2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사	회	복	지	+	간	호	2					1	1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2																							2								
	공	업	+	시	설	3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1																										
	전	산	+	방	송	통	신	+	시	설	1																									1	
9급	소	계	137		4	1	2	4	2	4	7	5	3	4	11	1	2	5	12	4	5	2	2	1	2	6	5	3	3	7		5	10	2	6	6	1
	행	정	33		2	1					4				2	1	1	1	5		3	1	1			1			1	4		2			2	1	
	세	무	4					4																													
	전	산	3						1	1									1																		
	사	회	복	지	6							2	2	2																							
	사	회	복	지	6																																
	사	회	복	지	6																			</													

	행정 + 세무	5		2			1	1																		1
	행정 + 전산	5			2		1	1				1														1
	행정 + 사회 복지	6							3		2						1									
	행정 + 사서	2											2													
	행정 + 공업	4											2			1				1						
	행정 + 농업	1															1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해양수산	3																1	2							
	행정 + 보건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7				1				1			1				1		1			1				
	행정 + 방재 안전	1																						1		
	행정 + 방송 통신	2											2													
	공업 + 시설	2										1	1													
	시설 + 방재 안전																									
	행정 + 전산 + 시설	1					1																			
	행정 + 공업 + 시설	3												2											1	
	행정 + 시설 + 방재 안전	1																					1			
	전화 상담 운영	2					2																			
연구직	연구 직 합 계	7						1			1	2								1	2					
연구소	계	1																			1					
	행정 + 시설 + 학예 연구관	1																				1				
연구사	소 계	6						1			1	2									1	1				
	학 예 연 구 사	5									1	2										1	1			
	기 록 연 구 사	1					1																			
지도직	지 도 직 합 계	3															2						1			
지도사	소 계	3															2						1			
	농 촌 지 도 사	3															2						1			

[별표2] (개정 2013.12.23., 2014.3.31., 2014.6.2., 2015.1.12., 2016.1.18., 2017.7.13., 2018.1.8., 2018.7.13., 2019.1.3., 2019.6.10., 2019.12.30., 2020.5.25., 2021.1.4., 2021.6.28. 2022.1.3., 2023.1.16., 2023.7.17., 2024.1.22., 2024.07.15., 2025.1.6., 2025.7.14., 2025.12.29., 2026.7.20.)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의회, 직속기관)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	서 명	의회사무국 소계	직속기관 소계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총	계	35	80	25	33	22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35	80	25	33	22
4급	소	계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1				
5급	소	계	3	3	1	1	1
	행	정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6급	소	계	6	15	5	6	4
	행	정	5				
	보	건		1			1
	행	정 + 보 건		3	2		1
	보	건 + 식 품 위 생					
	보	건 + 약 무		1	1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1				
	행	정 + 보 건 + 식 품 위 생		2	2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보	건 + 의 료 기 술 + 약 무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1	1
	의 료 기 술 + 약 무 + 간 호			1			1
7급	소	계	14	25	7	15	3
	행	정	12				
	전	산	1				
	속	기	1				
	보	건		1	1		
	식	품 위 생		1	1		
	간	호		12		10	2
	행	정 + 간 호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4	4		
	보	건 + 간 호		4		3	1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보	건 + 약 무 + 간 호		1	1		
8급	소	계	10	22	6	9	7
	행	정	6				
	속	기	2				
	공	업		1	1		
	보	건		4	2	2	
	식	품 위 생					
	의 료 기 술			6		6	
	간	호		1	1		
	방	송 통 신	1				
	운	전	1				
	행	정 + 방 송 통 신					
	사	회 복 지 + 간 호		3			3
	보	건 + 식 품 위 생		2	2		
	보	건 + 간 호		3			3
	의 료 기 술 + 간 호			2		1	1
9급	소	계	1	14	5	2	7
	보	건		1			1
	식	품 위 생		1	1		
	운	전	1	3	1	1	1
	사	회 복 지 + 보 건		5	2	1	2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2			2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별표3] (개정 2013.12.23, 2014.3.31, 2014.6.2, 2015.1.12, 2015.8.3, 2016.1.18, 2016.7.8, 2017.1.19, 2017.7.13, 2018.1.8, 2018.7.13., 2019.1.3., 2019.6.10., 2019.12.30., 2020.5.25., 2021.1.4., 2021.6.28. 2022.1.3., 2023.1.16., 2023.7.17., 2024.1.22., 2024.07.15., 2025.1.6., 2025.7.14., 2025.12.29., 2026.7.20.)

[별표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사업소)

기 관 명			사업소									
			사업소 소계	맑은물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 서 명	수 도 과		하 수 과	남 해 수 질 관 리 과	북 항 수 질 관 리 과	문 예 시 설 관 리 사 무 소	체 육 시 설 관 리 사 무 소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소	환 경 시 설 관 리 사 무 소	
	총 계	194	41	27	28	15	18	14	18	18	15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188	40	27	28	15	18	14	13	18	15	
4급	소 계	1	1									
	행 정 + 기 술	1	1									
5급	소 계	8	1	1	1	1	1	1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2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 환 경 연 구 관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 환 경 연 구 관	1				1						
6급	소 계	42	11	5	6	4	4	2	4	3	3	
	행 정	2	1	1								
	방 호	1							1			
	공 업	1				1						
	환 경	1	1									
	시 설	1		1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공 업	3			1					2		
	행 정 + 시 설	7	1	1		1	2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사	2							2			
	공 업 + 환 경	2			1	1						
	공 업 + 시 설	3	2	1								
	공 업 + 환 경 연 구 사	1			1							
	행 정 + 전 산 + 시 설	2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3					1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시 설 + 사 무 운 영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연 구 사											
	공 업 + 전 기 운 영 + 기 계 운 영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 방 송 통 신	1					1					
	공 업 + 수 의 + 환 경 + 환 경 연 구 사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 환 경 연 구 사	1	1									
	토 목 운 영	1	1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전 기 운 영 + 기 계 운 영	1	1									

7급	소	계	45	14	8	4	2	4	2	3	4	4
	행	정	9	3	2			1	1		1	1
	세	무	1								1	
	전	산	1							1		
	방	호	1	1								
	공	업	17	2	5	4	1	1		1	2	1
	환	경	2	1			1					
	시	설	2	1	1							
	운	전	1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시 설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사	1							1		
	공	업 + 시 설	1	1								
	건	축 운 영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열	관 리 운 영										
	공	업 + 전 기 운 영	2	1				1				
	공	업 + 기 계 운 영	2									2
	공	업 + 화 공 운 영										
	공	업 + 열 관 리 운 영	1						1			
	시	설 + 건 축 운 영	1					1				
	운	전 + 기 계 운 영	1	1								
8급	소	계	49	7	9	5	5	5	3	4	7	4
	행	정	13	3	2		1	1	1		4	1
	세	무	2								2	
	공	업	14		3	3	3	2	1	2		
	환	경	2	2								
	시	설	7	1	3				1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1		1							
	공	업 + 환 경	2	1								1
	공	업 + 시 설	1									1
	전	기 운 영	1									
	기	계 운 영										
	화	공 운 영										
	공	업 + 전 기 운 영	2			1		1				
	공	업 + 기 계 운 영	3				1				1	1
	공	업 + 화 공 운 영	1			1						
	공	업 + 열 관 리 운 영										
	시	설 + 건 축 운 영										
	운	전 + 기 계 운 영										
9급	소	계	43	6	4	12	3	4	6	2	3	3
	행	정	2						1	1		
	공	업	12	1		3	2	1	1	1	1	2
	환	경	3	1		2						
	시	설	1		1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1	1				3			1

	행 정 + 세 무	2								2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시 설	1			1						
	공 업 + 시 설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공 업 + 시 설 + 환 경	1	1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화 공 운 영										
	사 무 운 영										
	공 업 + 전 기 운 영	2			1		1				
	공 업 + 기 계 운 영	6		1	4		1				
	공 업 + 화 공 운 영	1				1					
	공 업 + 열 관 리 운 영										
	시 설 + 건 축 운 영										
	운 전 + 기 계 운 영	1	1								
연구직	연 구 직 합 계	6	1						5		
연구관	소 계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관	1							1		
연구사	소 계	5	1						4		
	학 예 연 구 사	4							4		
	환 경 연 구 사	1	1								
지도직	지 도 사 합 계										
	농 촌 지 도 사										

[별표4] (개정 2013.12.23, 2014.3.31, 2014.6.2, 2015.1.12, 2015.6.8, 2016.4.11, 2016.7.8, 2017.1.19, 2017.7.13, 2018.1.8, 2023.7.17, 2018.7.13.,2019.1.3.,2019.6.10.,2019.12.30.,2020.5.25., 2021.1.4., 2021.6.28. 2022.1.3., 2023.1.16., 2023.7.17., 2024.1.22., 2024.07.15., 2025.1.6., 2025.7.14., 2025.12.29., 2026.7.20.)

[별표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동)

기 관 명			동																							
직급	부	서 명	동 소계	용 당 1 동	용 당 2 동	연 정 동	산 정 동	연 산 동	원 산 동	대 성 동	목 원 동	동 명 동	삼 학 동	만 호 동	유 달 동	죽 교 동	북 항 동	용 해 동	이 로 동	상 당 동	하 당 동	신 항 동	삼 향 동	옥 암 동	부 흥 동	부 주 동
	총	계	324	14	13	13	13	13	15	13	13	13	13	13	13	13	13	17	13	19	15	16	13	14	14	18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324	14	13	13	13	13	15	13	13	13	13	13	13	13	13	17	13	19	15	16	13	14	14	18
5급	소	계	2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6	1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1										1													
	행	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	정+사회복지+시설	5			1				1	1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사회복지+공업 + 해 양 수 산	1					1																		
	행	정+사회복지+해양 수 산 + 시 설	1											1												
	행	정+사회복지+보건 + 간 호	1																						1	
	행	정+공업+농업+간 호	1																				1			
6급	소	계	4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행	정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	회 복 지	5						1					1				1			1					1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14	1	1	1	1	1			1		1			1			1	2		1	1	1		
	행	정 + 농 촌 지 도 사	1																				1			
	행	정+전산+사회복지	4		1	1																			1	1
	행	정+사회복지+수의	1												1											
	사	회복지+보건+간호	3							1		1					1									
7급	소	계	54	3	3	2	2	2	3	2	3	2	2	3	2	2	3	2	2	3	3	2	1	2	2	3
	행	정	26	1	1	1	1	1	1	1	3		1	2	1		2	1		1	2	1	1	1	1	2
	사	회 복 지	20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간	호	2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6									1			1	1		1	1	1						
8급	소	계	97	5	3	3	3	3	5	4	4	3	5	3	3	4	4	6	4	7	4	5	5	4	4	6
	행	정	27	1	1	1	1	1	1	2		1	2	1		2	1		2		2	1	2		2	3
	사	회 복 지	35	3	1	1	1	1	2	1	2	1	1	1	1	1	1	4	1	4	1	2	1	2		2
	간	호	2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12		1				1		1		1		1		1	1		2		1	1		1	
	행	정 + 방 재 안 전	2	1																				1		
9급	소	계	103	3	4	5	5	5	4	4	3	5	3	4	5	4	3	6	4	5	5	6	4	5	5	6
	행	정	37		3	2	1	2	1		1	3	1	2	2	2	1	3	1	1	1	2	1	2	2	3
	사	회 복 지	42	2	1	1	2	1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23	1		2	2	2	1	2					2			1	1	1	2	2	1	1	1	1
	행	정 + 방 재 안 전	1																	1						

**2026년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민투표법」 제5조 · 제9조 및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장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 목포시장

(단위 : 명)

구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계(A)	내국인	외국인			
총계	171,016	170,833	183	342	170,674	25,602
용당1동	8,005	7,993	12	31	7,974	1,197
용당2동	3,971	3,962	9	20	3,951	593
연동	3,352	3,348	4	13	3,339	501
산정동	7,215	7,211	4	18	7,197	1,080
연산동	7,322	7,322	0	5	7,317	1,098
원산동	9,470	9,455	15	15	9,455	1,419
대성동	3,730	3,728	2	2	3,728	560
목원동	5,527	5,522	5	17	5,510	827
동명동	4,011	4,010	1	16	3,995	600
삼학동	4,539	4,537	2	8	4,531	670
만호동	2,147	2,144	3	7	2,140	321
유달동	3,316	3,314	2	8	3,308	497
죽교동	2,263	2,261	2	11	2,252	338
북항동	6,920	6,914	6	10	6,910	1,037
용해동	12,351	12,344	7	10	12,341	1,707
이로동	7,949	7,943	6	11	7,938	1,191
상동	17,746	17,726	20	27	17,719	1,707
하당동	12,310	12,294	16	27	12,283	1,707
신흥동	13,407	13,391	16	24	13,383	1,707
삼향동	3,617	3,614	3	17	3,600	540
옥암동	8,310	8,296	14	11	8,299	1,245
부흥동	6,637	6,616	21	11	6,626	994
부주동	16,901	16,888	13	23	16,878	1,707

□ 목포시의회 지역구 의원

(단위 : 명)

구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계(A)	내국인	외국인			
목포시가 선거구	19,867	19,840	27	72	19,795	3,959
용당1동	8,005	7,993	12	31	7,974	198
용당2동	3,971	3,962	9	20	3,951	198
연동	3,352	3,348	4	13	3,339	198
삼학동	4,539	4,537	2	8	4,531	198
목포시나 선거구	20,259	20,237	22	38	20,221	4,045
이로동	7,949	7,943	6	11	7,938	203
하당동	12,310	12,294	16	27	12,283	203
목포시다 선거구	20,128	20,114	14	41	20,087	4,018
산정동	7,215	7,211	4	18	7,197	201
대성동	3,730	3,728	2	2	3,728	201
죽교동	2,263	2,261	2	11	2,252	201
북향동	6,920	6,914	6	10	6,910	201
목포시라 선거구	15,001	14,990	11	48	14,953	2,991
목원동	5,527	5,522	5	17	5,510	150
동명동	4,011	4,010	1	16	3,995	150
만호동	2,147	2,144	3	7	2,140	150
유달동	3,316	3,314	2	8	3,308	150
목포시마 선거구	29,143	29,121	22	30	29,113	5,823
연산동	7,322	7,322	0	5	7,317	292
원산동	9,470	9,455	15	15	9,455	292
용해동	12,351	12,344	7	10	12,341	292
목포시바 선거구	29,673	29,636	37	55	29,618	5,924
상동	17,746	17,726	20	27	17,719	297
삼향동	3,617	3,614	3	17	3,600	297
옥암동	8,310	8,296	14	11	8,299	297
목포시사 선거구	36,945	36,895	50	58	36,887	7,378
신흥동	13,407	13,391	16	24	13,383	369
부흥동	6,637	6,616	21	11	6,626	369
부주동	16,901	16,888	13	23	16,878	369

202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2026.7.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18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청구권자 총수 (A-B)	서명인 수	비고 (비율로 산정시)
	계(A)	주민등록자	외국인				
목포시	173,258	173,040	218	3412	172,916	15,720	1/1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약칭 규정 중복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 제3조에서 '목포시장'과 '목포시'의 약칭을 규정, 제4조제1항의 중복된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목포시장' ⇨ '시장', '목포시' ⇨ '시'로 변경
- 상위법에 따라 기본전략의 구성 내용 정비(안 제4조제2항제2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심의 생략 사항의 결정 권한 변경(안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3항제5호)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원장’ ⇨ ‘위원회’가 정하도록 변경하여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

○ 상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기재 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목적에 맞게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 위원회 소속을 시장 소속으로 변경 (안 제11조제1항)

-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부시장’ ⇨ ‘시장’ 소속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12조)

- (공동위원장)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부시장’ ⇨ ‘시장’으로 격상, 위촉직 공동위원장·부위원장 선정 방식을 ‘선출’ ⇨ ‘호선’으로 명확화
- (당연직 위원)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 ⇨ ‘지속가능발전 해당 분야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7. 20. ~ 2026. 8. 10.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8. 10.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조례 제 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를 “시장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을 “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5호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을 “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을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관련 본청”을 “해당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목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 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 ----- ----- ----- -----.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u>	2. <u>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 략에 관한 사항</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	5. ----- -----

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⑤ (생략)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
는 사항

④ (생략)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
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
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위원회가 정하는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위원회가 정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
성) ① -----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
-.

③ ----- 호선한다.

④ ----- 해당 분야 -----

-----.

1. ~ 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책 방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일원화
- 시장, 시민·기업의 책무 규정 정비(안 제4조제3항, 제5조)
 - (정비사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권자는 시장이며,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법 제9조제3항, 영 제6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③ ‘협의회에서 수립된 이행계획의 반영 및 결과 공표’ 삭제

- (제5조 시민과 기업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 협의회 기능 정비 (안 제6조)

- 근거 법령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기능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 실천사업 추진으로 개정, 그 외 기능은 역할 범위 등 일부 정비

○ 공동의장을 시장으로 격상, 직무대행 지명권자를 상임의장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 제3항)

- (공동의장) 시정과 시민실천사업의 연계, 민관협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당 연직을 ‘부시장 ⇨ 시장’으로 격상
- (직무대행 지명권자) 상임의장 직무 공백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대행 지명권자를 ‘부시장(공동의장) ⇨ 상임의장’으로 변경

○ 위원 위촉 기준 정비 (안 제8조제1항, 제4항)

- (당연직 위원) ‘기획·환경·도시건설·공원녹지·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 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
- (위촉직 성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 운영위원회 구성 시 공동의장 제외 (안 제10조)

- 상임의장 중심의 실질적 운영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결산 기한 정비 (안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산 기한을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로 정정

○ 단체명 표기 정정(안 제28조)

- ‘지속발전 가능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정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 제28조제4항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7. 20. ~ 2026. 8. 10.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8. 10.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조례 제 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목포시의”를 “시의”로, “참여하여 협력해야”를 “참여하여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시장”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② 공동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호선된 공동의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을 “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임의장, 공동의장”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속발전 가능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과 「지속가능발 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 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 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속가능발 전 기본법」에 따라 ----- ----- ----- ----- -----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 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 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 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 시의 ----- 참여하여 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5. (생 략)

제7조(구성) ① (생 략)

② 공동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된다.

④ (생 략)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호선된 공동의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제8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2.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생략)

⑤ -----

----- 상임의장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

1. ----- 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
--- 상임의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생략)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발전 가능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
----- 2개월 -----

-----.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진) -----

----- 지
속가능발전협의회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의전차량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

목포시 의전차량 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목 포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1명

- 응시번호 : 1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7. 21.(화) 14:00
- 장 소 : 목포시청 소회의실(민원동 2층)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13:5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1차 합격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심사결과 적임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격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및 근무계약이 종료됨.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1.(화) 예정

-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1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 서무팀(☎ 061-270-32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